부 칙<2002. 4. 22. 조례 제3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31. 조례 제3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3. 12. 22. 조례 제3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 제5호의 한시정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4. 3. 22. 조례 제3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 조례 제3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0. 조례 제3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 3. 31. 조례 제4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6. 조례 제4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4. 26. 조례 제4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 .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8. 11. 25. 공포 조례 제3280호
개정 2000. 5. 22. 공포 조례 제3437호
개정 2001. 2. 26. 공포 조례 제3513호
개정 2002. 4. 22. 공포 조례 제3602호
개정 2003. 3. 31. 공포 조례 제3658호
개정 2003. 12. 22. 공포 조례 제3707호
개정 2004. 3. 22. 공포 조례 제3727호
개정 2004. 11. 1. 공포 조례 제3781호
개정 2006. 3. 20 . 공포 조례 제3887호
개정 2008. 3. 31. 공포 조례 제4159호
개정 2009. 4. 6. 공포 조례 제4278호
개정 2010. 4. 26. 공포 조례 제4411호
개정 2010. . . 공포 조례 제 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65명
3. 삭제 <2003. 3. 31>
4. 삭제 <2006. 3. 20>
5. 삭제 <2008. 3 .31>

제 3 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11. 25. 조례 제328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5. 22.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6. 조례 제3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직급별 정원)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제○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별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 **시행일 : '10. 7. 1**

〈 시·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제○조(전문위원)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중 략) .... 5.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신 설> ②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 (중 략) .... 4. 기타 위원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 [교육청] 현행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정수 조례는 폐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상 정원관리 단위기관을 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로 변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정원의 총수)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명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 ○명	제○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 ○명** 2. (현행과 같음)

○ **(정원)** 교육 전문위원과 소속 사무직원은 현행 의사국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로 책정

- 현행과 같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교육자치법에 따라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
- 정원관리 단위기관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로 변경

※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이 함께 구성되므로 교육 전문위원실에 시·도의회사무처 직원 추가 배치 가능. 다만, 그 정원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책정

□ 자치법규

○ **(시·도)** 시·도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정수 조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설치에 관한 사항 반영

- 시·도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정수 조례에는 사무직원 정원을 교육청 정원으로 책정함을 명시
-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는 교육 전문위원 규정을 신설

〈 시·도의회사무처 설치 및 정수 조례 개정(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조(전문위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조(전문위원) (현행과 같음) 제○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안내

1 안내 배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 7.1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무기구 정비 필요

○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검토한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을 제시하여 시·도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무기구 정비를 지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 〉

개 정 전	현 행
제17조 (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정비 방안

□ 조 직

○ **(기구)** 현행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폐지하고, 의회 사무처에 교육위원회 담당 4급 전문위원을 설치

- 교육의원 정수가 6명 이상인 시·도는 4급 1개와 5급 1개를, 6명 미만인 나머지 시·도는 4급 1개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 지방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정수를 제외하고 산정

시·도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안내

2010. 4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더 큰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만듭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알림**

1. 관련

가. 학교선진화과-1602(입법예고 알림, 2010.3.15)

나. 학교선진화과-2559(법제처 법제심사 의뢰, 2010.4.15)

2. 위 가호 관련으로 입법예고하였던「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법제처) 협의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수정된 안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3.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붙임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을 활용하여「**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10.7.1부터 시·도의회 사무처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는 교육위원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1부. 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수신자 강원도교육감,경기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

주무관 홍성범 행정사무관 김용섭 학교선진화과 과장 배성근
협조자
시행 학교선진화과-2769 (2010.04.2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학교선진화과 / www.mest.go.kr
전화 02-2100-6316 전송 02-2100-6747 / doinbul@mest.go.kr / 공개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3명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60명	2. ---------- : 3,065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65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 붙임

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2769호, 2010. 4. 26) : 붙임

다.「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문 : 붙임

라.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바. 교육규제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5

제출년월일 2010. 06.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사무 지원에 필요한 지원조직 및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2769호, 2010. 4.26)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을 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8명(13명→8명, 5명 감소) (안 제2조제1호)

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0명에서 5명 증가한 *3,065*명**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